객원교수 임용에 관한 세칙

제정 2012.9.1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교원인사관리규정 제2조제3항에 의거 객원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객원교수”라 함은 대학 및 학과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거나 직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자격) 객원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본 대학의 교육사업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관련 분야 산업체 경력 또는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
2. 위의 호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 및 사회경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제4조(채용 절차 및 계약) ① 객원교수의 채용은 학과 및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할 수 있다

② 객원교수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.

1. 이력서
2. 이력에 제시된 연구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3. 객원교수 임용 후 활동계획서(자유양식)
4. 초빙분야 학과(부)장 추천서(채용 시의 활동 내용 등 추천 사유를 포함하여 기술함) (자유양식)

③ 객원교수는 1년 계약직 별지제1호서식으로 임용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처우) 객원교수에게는 필요에 따라 강의, 연구, 대외협력 활동 등을 요청할 수 있고, 그에 따른 응분의 급여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의무) ① 객원교수는 본 대학의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객원교수는 채용 목적에 맞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적용의 예외) 객원교수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교직원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객원교수 위촉의 취소) 객원교수가 교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은 객원교수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객원교수 임용 계약서

객원교수를 채용함에 있어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을 “갑”이라 하고, 객원교수를 “을”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계약 당사자)

(갑) 수원여자대학교 총장

(을) 성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주 소 :

제2조(신분 및 계약 기간)

직 명 :

계약 기간 :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( )

제3조(임무)

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부여한 사항.

제4조(복무)

“을”은 객원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본 대학의 복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계약 조건)

가. “을”은 본 객원교수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나. “을”은 업무 수행에 있어 “갑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다. “을”은 제 규정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갑”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
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“갑” 수 원 여 자 대 학 교 총 장

“을” 주 소 :

성 명 :